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4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 박성중ㆍ이명수ㆍ박덕흠

김예지 · 유경준 · 이 용

강기윤・김상훈・김기현

홍문표 · 서일준 · 추경호

김승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서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차등하여 취득세를 경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2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둔 사람이 해당 자녀들과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주택(수도권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경우로 한정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1. 자녀가 2명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
- 2. 자녀가 3명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 3.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

- 2.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5(다자녀가구의 주택 구
	<u>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2</u>
	<u>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u>
	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를 둔 사람이 해당 자녀
	들과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할 목적으로 주택(수도
	권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
	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
	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취득세
	의 100분의 30
	2. 자녀가 3명인 경우: 취득세
	의 100분의 50
	3.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취
	<u> 득세의 100분의 70</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다.
- 1.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
- 2.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 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가
 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매각·증여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